

국토교통부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기 관 명 (부 서 명)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연 월 일	2022. . .

## 1. 개정이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자체가 지정하는 도시공원으로서 행위제한을 통하여 소극적으로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행위제한만으로는 적극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 국민에게 문화 생활을 위한 공원·녹지 제공이 어려워 국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매수청구 등을 통해 소유권 취득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안 3-2.)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전에 공원조성계획으로 설치되었던 체육시설 등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적법하게 설치된 체육시설 등으로 인정하여 공원관리청의 체계적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안 3-3.(1))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및 해제 검토 주체를 현실화함(안 2-4-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훈령안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5.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으로 한다.

3-2. “매수청구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을 “매수청구 등에 의하여 매수가 완료된 토지는”으로 하고, “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로 한다.

3-3. (1) “법 시행 이전에 기존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시설구역 또는 시설구역 외에”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이전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